

실제 노동량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의 54%에 불과 이대 문숙재, 성심여대 정영금 교수 〈주부의 사고...〉 논문에서 주장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부에게 지급되는 주부사망보험금이 아직도 일용노동자임금으로 부당하게 계산되고 있어 주부의 가정노동시간과 노동대체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배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가정학회지에 〈주부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한 문숙재(이화여대 가정관리학), 정영금(성심여대 가정관리학) 교수에 따르면 주부가 사고발생시 청구해 받고 있는 손해배상액은 주부가 실제 가정에서 수행하는 노동량에 비할 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절반수준인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주부를 화폐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같게 처리하는 현행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불합리성을 주부의 가정노동가치 산정을 기초로 처음 밝힌 것으로 △총합적 대체비용(주부의 1일 총가정노동시간×파출부 시간당 임금률×30)으로 계산하면 현재 지급보험금의 20~10%까지 상승하며 △전문가 대체비용으로는 100~2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남편 및 자녀 2명과 살고 있는 35세 주부가 사망했

을 때 90년도를 기준한 현행 사망보험금은 3천2백6십만1천2백원이 된다. 그러나 이들 주부들은 가정에서 평균 11시간 일을 하고 있어 주부사망시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할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일당 1만1천50원 일용노동단가에 취업가능수 25일을 곱한 현행 사망보험금은 휴일조차 없는 주부에게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게 이 연구의 요지.

아야 하기에 일용노동단가에 근거한 현보험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시는 장래 소득액이나 취업가능성보다 사고 당시의 실질소득액이나 노동가치가 중요시되므로 가정에서 10시간씩 일하는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를 △가정환경별 △주부개인별 △주부유형별로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6원 △전문가 대체비용법 사용시 67만6천8백47원 등으로 주부의 월노동가치를 산정했다. 이 결과를 현 보험금 지급 사례와 비교해 재적용시켜 보면 주부들이 당하는 '불이익'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일례로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 가정의 42세인 주부의 사망시 상실수익액 계산은 일용노동단가 1만1천50원×25를 해서 나온

파출부 시간당 임금률×30일)으로 계산하면 57% 상승된 3천7백6천2백원이, 전문가 대체비용을 이용해 산정하면 114%가 증가된 5천39만1천8백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급되는 배상액과 '적정수준의 배상액'과의 큰 차이는 물론 보험금 산정시의 주부노동가치가 파출부 고용비용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



▲문숙재 교수

치가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또 주부의 노동량 차이에 따라 상승율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금보다 20~100% 또는 100~200% 상승한 선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배상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숙재 교수는 보험금은 노력의 댓가이므로 정당한 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배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판례에 나타난 그간 주부노동임금이나 도시일용 보통 인부임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이런 기준적용의 부당함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주부를 화폐 소득 없는 무직자로 처리 가정노동량과 대체비용에 따르면 2십~2백%까지 상승돼

따라서 주부의 가정노동시간과 노동대체비용을 고려한 총합적 대체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이 주부에게는 보험금의 100%정도 상승된 6천41만8백80원이 지급돼야 한다.

문·정 두 교수는 "이러한 차액이 생기는 것은 주부사망시 지급되는 상실수익액의 기준을 가정노동 대체비용인 월53만8천4백38원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며 전문가가 아닌 파출부에게 대체한다 하더라도 월42만4백69원을 기준으로 지급받

았다.

주부 가사노동 가치
파출부 고용 비용에도 못 미쳐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문·정 교수가 이 연구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고용인을 두지 않은 핵가족의 전업주부(남편 직업이 무직, 단순노동자인 가정과 소득 50만원 미만 가정은 제외)를 대상으로 연구한 가정노동가치는 △총합적 대체 비용법시 49만7천9백9

월 상실액 27만6천2백50원에 본인 생활비 35%를 뺀(100-35%)를 곱하고 다시 여기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계수 114.5를 곱해 나온 액수가 2천56만7천30원. 여기에 장례비 60만원과 위자료 2백40만원(본인 1백만원, 배우자 50만원, 자녀 30만원, 부모 각 30만원)을 합하면 총2천3백56만7천3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 총합적 대체비용(주부 1일 총가정노동시간×

내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주부의 가정노동가치는 가족수, 막내자녀의 연령, 학령전 자녀 유무, 주부 교육수준 등 가정환경적 변수에 따라라도 차이를 보여 총합적 대체비용 계산시는 가족수가 3명일 때, 막내자녀가 4세 이하일 때 가정노동가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자인 문숙재 교수는 "주부개인별, 주부유형별 가정노동가치를 현행 주부 보험금 산정에 이용하면 주부의 노동가